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8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김대식
김선교 · 강대식 · 고동진
안철수 · 정성국 · 유용원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2분의”를 “3분의”로,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④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u>2분의 1 이상</u> 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u>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 ----- ----- ----- <u>3분의</u> ----- ----- ---- <u>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u> ----- ----- ----- ----- -----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